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	--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 록	
건 명	부 서
1.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복지지원과
2. 하이면 복합문화 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경제기업과
3.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농촌정책과
4.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농촌정책과
5.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농촌정책과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 성 군 수

## 1. 제안사유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외 4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 2. 재산현황 총괄

구분		수량	면적(m <sup>2</sup> )	기준가격(천원)	비고
취득	계	14	8,797	19,058,183	
	토지	9	5,272	1,268,415	
	건물	5	3,525	17,789,768	

## 3. 사업별 재산내역

사 업 명	재산 구분	재산 유형	재산의 표시			담당부서
			수량	면적 (m <sup>2</sup> )	기준가격 (천원)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취득	토지	1	634	1,105,062	복지지원과
		건물	1	1,082	600,768	
하이먼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취득	토지	3	1,337	77,973	경제기업과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취득	건물	2	837	11,270,000	농촌정책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취득	토지	5	3,301	85,380	농촌정책과
		건물	1	990	3,110,000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취득	건물	1	616	2,809,000	농촌정책과

#### 4. 사업별 개요

##### ①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 (목적)

- 한부모, 조손, 다문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속적 증가
- 가족센터 건립으로 가족 돌봄 지원 강화, 성별·세대 간 소통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중심의 보편적·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 수행 필요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
-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등 복합화 사업추진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 (용도) 고성군가족센터 확충

###### 나. 취득 개요

###### ○ 대상 재산현황(행정재산, 재산관리관: 복지지원과)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m <sup>2</sup> )	기준가격(천원)	비고
계			1,716	1,705,830	
토지	고성읍 동외리 286-3 (舊. 고성군산림조합)	대지	634	1,105,062	
건물		철근 콘크리트	1,082	600,768	매입 후 리모델링

###### ○ 사업기간: 2022. 1. ~ 2024. 12.(3년)

###### ○ 총사업비: 5,610백만 원(국비 300, 군특 900, 도비 360, 군비 4,050)/ 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사업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5,610	600	900	4,110	
국비	300	300	-	-	
군특	900	-	450	450	
도비	360	90	135	135	
군비	4,050	210	315	3,525	

- 재원조달: 국비, 지방비(도비, 군비) 등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일: 2022. 7. 22.(제276회, 제2472호)

####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비고
위치	고성읍 교사리 62-5	고성읍 동외리 286-3	건축비 상승	
예산액	3,000백만 원	5,610백만 원	토지·건물 매입비 추가	
추진방법	신축	토지·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건축비 상승	리모델링비 2,687,000천원

#### 라. 추진경위 및 변경 후 계획

- 2021. 10. 5: 20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 2021. 11. 11: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7. 2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10. 4: 건축기획 용역
- 2022. 11. 4: 설계건축단계 컨설팅
- 2023. 3. 24: 지방재정 투자재심사(변경)
- 2023. 9. 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23. 9. 21: 공공건축 사업계획 변경계획 확정(신축→리모델링)
- 20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
- 2024. 1 ~ 3: 사업대상자 보상, 실시 설계, 시공사 선정
- 2024. 4 ~ 12: 착공, 준공
- 2024. 12. : 이전 개소

#### 마. 기대효과

- 가족센터 건립으로 지역 중심의 포괄적 가족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등 복합화 사업추진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여성의 취·창업 지원 등 가족 관련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 추진부서: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여성친화담당 허수은 (☎2382)



## ②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하이면 청사 이전 부지 인근에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인 문화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부지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나. 취득 개요

- 대상 재산현황(행정재산, 재산관리관: 경제기업과)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기준가격(천원)	비고
계(3필지)			1,337	77,973	
토지	하이면 덕호리 214	답	401	15,759	
토지	하이면 덕호리 218-1	전	105	4,127	
토지	하이면 덕호리 496-2	답	831	58,087	

- 사업기간: 2023. 7. ~ 12.
- 총사업비: 550,000천 원(국비 100%) / 특별회계
- 재원조달: 기금

### 다. 추진경위

- 2022. 3.: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
- 2022. 12.: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라. 향후계획

- 2023. 12.: 대상 재산현황 필지 부지매입
- 2024. 5.: 2024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일대 사업시행

### 마. 기대효과

- 복합문화쉼터 및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생활 편의 증진코자 함

■ 추진부서: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에너지담당 박수용 담당자 박진희 (52243)

위치도



전경사진



### ③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고성읍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농촌 생활권 구축
- (용도) 고성읍 커뮤니티 셰어센터 및 큐어센터 건립

#### 나. 취득 개요

- 대상 재산현황(행정재산, 재산관리관: 농촌정책과)

구분	소재지	구조	면적(m <sup>2</sup> )	기준가격(천원)	비고
계(2개소)			837	11,270,000	
건물	고성읍 송학리 262-15	철근 콘크리트	426	5,370,000	
건물	고성읍 성내리 14 외 5필지 (14, 15, 15-1, 15-2, 19, 24)		411	5,900,000	

- 사업기간: 2020. 1. ~ 2024. 12.

- 총사업비: 19,000백만 원(국비 13,300, 도비 1,710, 군비 3,990)

구분	연차별	총사업비 (계)	2022 까지	2023	2024			2024이후
					소계	당초	추경	
사업량		커뮤니티센터 및 거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부지보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커뮤니티센터 및 거점센터 건립	커뮤니티센터 및 거점센터 건립		
계		19,000,000	7,474,000	8,333,400	3,192,600	3,192,600		
국비		13,300,000	5,231,000	6,142,480	1,926,520	1,926,520		
도비		1,710,000	673,000	656,976	380,024	380,024		
군비		3,990,000	1,570,000	1,533,944	886,056	886,056		
기타								

- 재원조달: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9%, 군비 21%)

- 건축: 11,270백만 원(국비 7,889, 도비 1,014.3, 군비 2,366.7)
  - 셰어센터: 5,370백만 원(국비 3,759, 도비 483.3, 군비 1,127.7)
  - 큐어센터: 5,900백만 원(국비 4,130, 도비 531, 군비 1,239)

#### 다. 추진경위

- 2019. 9.: 농식품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 2020. 3. ~ 6.: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및 동방장 부지 매입 완료
- 2022. 1.: 동방장 철거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
- 2022. 4. ~ 8.: 건축기획용역 시행 및 완료
- 2023. 4.: 실시설계 용역 시행

#### 라.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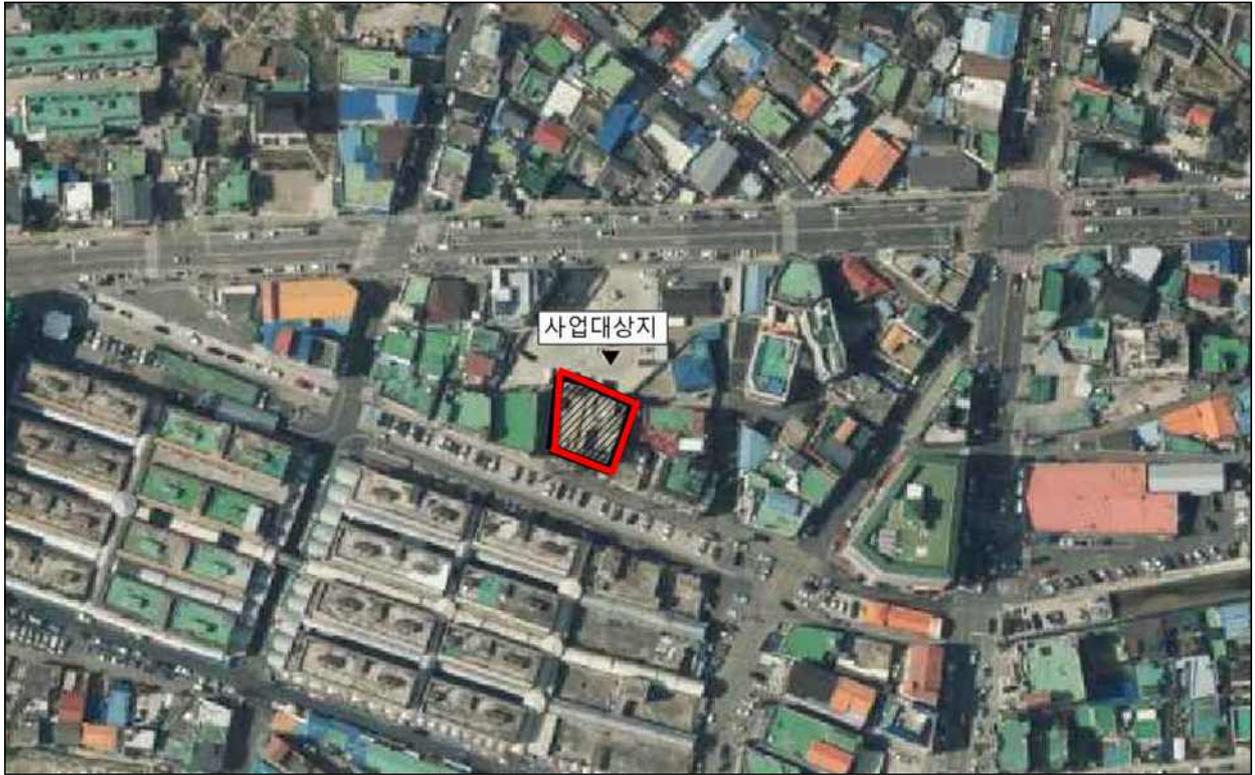
- 2023. 10.: 실시설계 용역 승인 및 완료
- 2023. 10.: 계약심사 및 입찰
- 2023. 11. ~ 2024. 12.: 공사 착공 및 완료

####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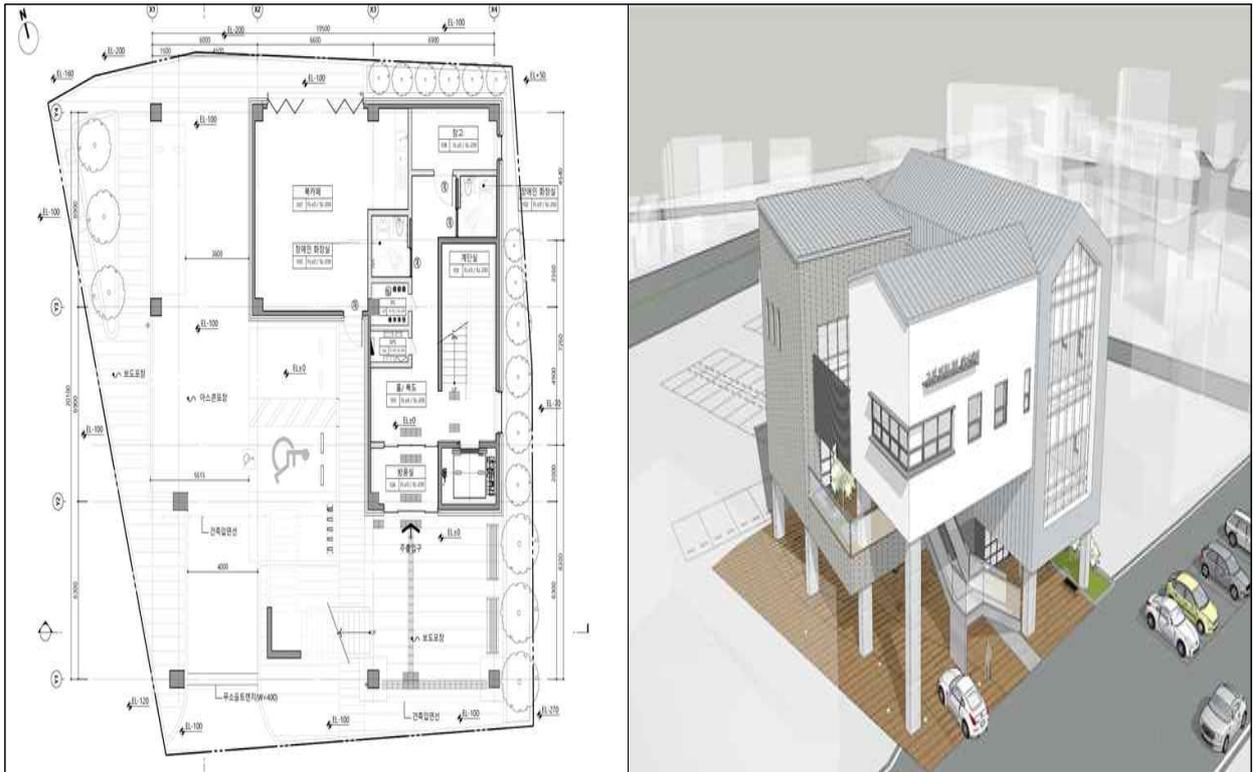
- 농촌지역의 생활 SOC 투자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회복
-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 도모

■ 추진부서: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농촌개발담당 민세규 담당자 정성용 (☎4143)

□ 위치도(세어센터)



□ 배치도 및 조감도(세어센터)



□ 위치도(큐어센터)



□ 배치도 및 조감도(큐어센터)



#### ④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스 공급 거점 구축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정주여건 강화
- (용도) 삼산면 건강문화센터 건립, 게이트볼장 조성

##### 나. 취득 개요

- 대상 재산현황(행정재산, 재산관리관: 농촌정책과)

구분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m <sup>2</sup> )	기준가격(천원)	비고
계			4,291	3,195,380	
토지	소계		3,301	85,380	
	삼산면 미룡리 87	답	433	13,639	
	삼산면 미룡리 88-2	답	701	21,030	
	삼산면 미룡리 91-3	답	842	25,849	
	삼산면 미룡리 91-4	답	730	22,411	
	삼산면 미룡리 산213-5	임야	595	2,451	
건물	소계		990	3,110,000	
	삼산면 미룡리 87 외 4필지	철근 콘크리트	990	3,110,000	

- 사업기간: 2020. 1. ~ 2024. 12.

- 총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800, 도비 360, 군비 840)

구분	연차별	총사업비 (계)	2021 까지	2022	2023			2023이후
					소계	당초	추경	
사업량		건강문화센터건립 게이트볼장조성, 건강생태 해안길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 부지매입 건강문화센터조성	게이트볼장조성, 건강생태 해안길 정비	건강문화센터건립 게이트볼장조성, 건강생태 해안길 정비		
계		4,000,000	1,046,000	1,125,000	1,829,000	1,829,000		
국비		2,800,000	732,000	788,000	1,280,000	1,280,000		
도비		360,000	94,000	101,000	165,000	165,000		
군비		840,000	220,000	236,000	384,000	384,000		
기타								

- 재원조달: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9%, 군비 21%)
  - 토지: 85,380천 원(국비 59,766, 도비 7,684.2, 군비 17,929.8)
  - 건축: 3,110백만 원(국비 2,117, 도비 279.9, 군비 653.1)

#### 다. 추진경위

- 2019.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
- 2020. 8.: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 2020. 9.: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 2022. 10.: 기본계획 승인
- 2023. 4.: 실시설계 용역 시행

#### 라.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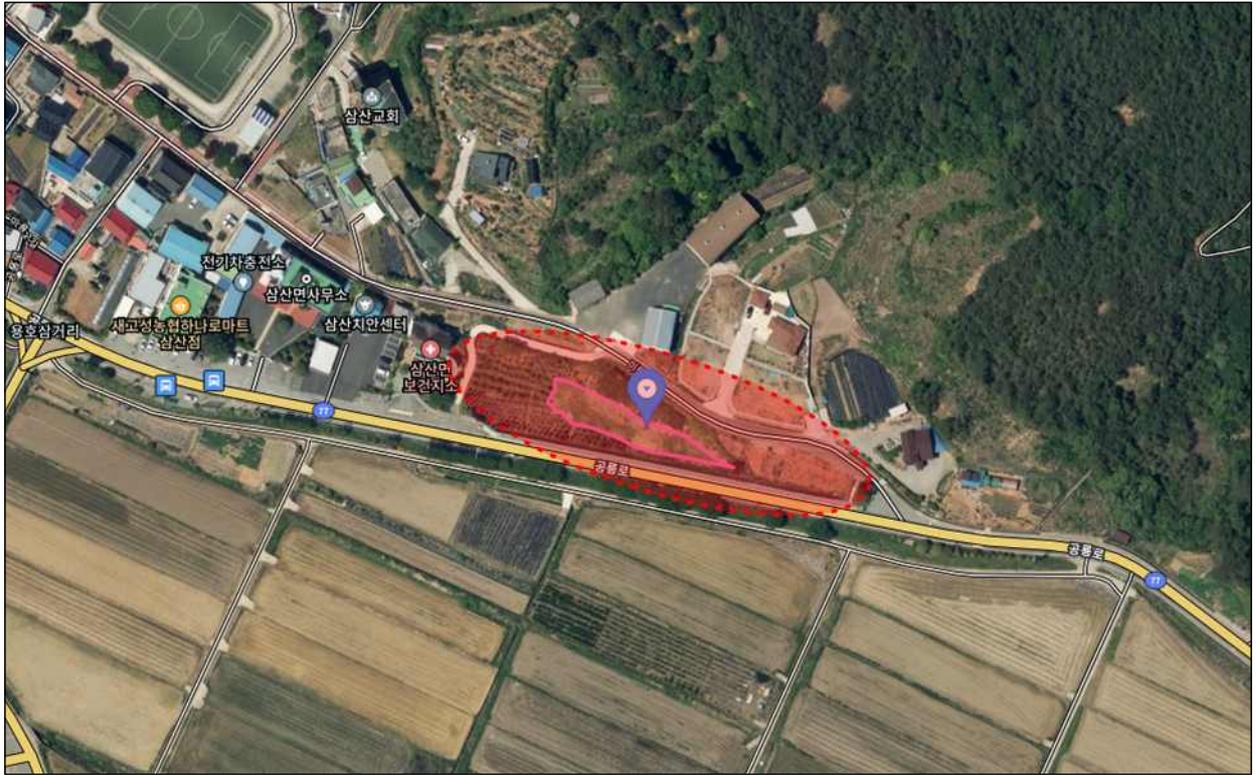
- 2023. 10.: 실시설계 용역 승인 및 완료
- 2023. 10.: 계약심사 및 입찰
- 2023. 11. ~ 2024. 12.: 공사 착공 및 완료

#### 마.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생활 SOC 투자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회복
-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 도모

■ 추진부서: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농촌개발담당 민세규 담당자 정성용 (☎4143)

□ 위치도



□ 조감도



## ⑤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스 공급 거점 구축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정주여건 강화
- (용도) 영현면 어울림센터 건립, 촌스런마당 조성

### 나. 취득 개요

- 대상 재산현황(행정재산, 재산관리관: 농촌정책과)

구분	소재지	구조	면적(m <sup>2</sup> )	기준가격(천원)	비고
건물	영현면 봉림리 44-41	철근 콘크리트	616	2,809,000	

- 사업기간: 2021. 1. ~ 2025. 12.

- 총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800, 도비 360, 군비 840)

구분	연차별	총사업비 (계)	2022 까지	2023	2024			2024이후
					소계	당초	추경	
사업량		촌스런마당조성, 어울림센터조성, 산책보행로정비 등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촌스런마당조성, 어울림센터조성, 산책보행로정비 등	촌스런마당조성, 어울림센터조성, 산책보행로정비 등		촌스런마당조성, 어울림센터조성, 산책보행로정비 등
계		4,000,000	1,006,000	1,940,000	705,000	705,000		349,000
국비		2,800,000	703,000	1,358,000	494,000	494,000		245,000
도비		360,000	91,000	175,000	63,000	63,000		31,000
군비		840,000	212,000	407,000	148,000	148,000		73,000
기타								

- 재원조달: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9%, 군비 21%)  
- 건축: 2,809백만 원(국비 1,966.3, 도비 252.8, 군비 589.9)

### 다. 추진경위

- 2020. 9: 농식품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 2021. 2: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 2021. 3: 폐교매각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
- 2021. 11: 지역역량강화 시행
- 2022. 10: 기본계획 승인
- 2023. 4: 실시설계 용역 시행

라. 향후계획

- 2023. 10.: 실시설계 용역 승인 및 완료
- 2023. 10.: 계약심사 및 입찰
- 2023. 11. ~ 2025. 12.: 공사 착공 및 완료

마.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생활 SOC 투자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회복
-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 도모

■ 추진부서: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농촌개발담당 민세규 담당자 정성용 (☎4143)

□ 위치도



□ 조감도



## 5. 재산구분별 취득 목록

### ① 토지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매입)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적(m <sup>2</sup> )				
<b>합 계</b>		<b>9필지</b>	<b>5,272</b>	<b>1,268,415</b>			
1	대지	고성읍 동외리 286-3	634	1,105,062	2024	고성군가족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2	답	하이면 덕호리 214	401	15,759	2023	하이면 복합문화 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3	전	하이면 덕호리 218-1	105	4,127			
4	답	하이면 덕호리 496-2	831	58,087			
5	답	삼산면 미룡리 87	433	13,639	2023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6	답	삼산면 미룡리 88-2	701	21,030			
7	답	삼산면 미룡리 91-3	842	25,849			
8	답	삼산면 미룡리 91-4	730	22,411			
9	임야	삼산면 미룡리 산213-5	595	2,451			

### ② 건물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매입)사유	비고
	구조	소 재 지	면적(m <sup>2</sup> )				
<b>합 계</b>		<b>5개소</b>	<b>3,525</b>	<b>17,789,768</b>			
1	철근 콘크리트	고성읍 동외리 286-3	1,082	600,768	2024	고성군가족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2	철근 콘크리트	고성읍 송학리 262-15	426	5,370,000	2024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3	철근 콘크리트	고성읍 성내리 14, 15, 15-1, 15-2, 19, 24	411	5,900,000	2024		
4	철근 콘크리트	삼산면 미룡리 87, 88-2, 91-3 91-4, 산213-5	990	3,110,000	2024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5	철근 콘크리트	영현면 봉림리 44-41	616	2,809,000	2025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